

"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수신 관내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 귀하
(경유)

제목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기술지도 철저 당부

1. 평소 노동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감독역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1~50억원(~'24.1월 유예)에서도 사고사망자가 매월 수시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바,
* '20~'21년 상반기, 조사통계상 월별 사망사고가 특이점 없이 매월 발생함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같은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적시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즉시 감독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귀 기관에서 지도 중인 1~50억원 건설현장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시기 바라며 현장에 **자율점검표(붙임1)**를 배포하여 **안전관리 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는 **불량현장**은 불시감독이 실시되도록 **우리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술지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전관리가 불량함에도 우리청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점검표 1부. 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감독관 **박한별** 과장 전결 2022. 3. 10.
조현철

협조자

시행 건설산재지도과-1393 접수

우 421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 (범어동 561-1 호명빌딩 8층) / www.moel.go.kr

전화번호 053-667-6365 팩스번호 053-720-4009 / phb7976@korea.kr / 비공개(7)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서관리카드건설산재지도과-1393 2 - 2